



## 명쾌한 수다

# 인터넷 댓글로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까요?

판례를 통하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와,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자동차 정보관련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A씨가 작성한 기사가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자동차뉴스 ‘핫이슈’란에 게재되었습니다.

B씨(피고인)는 해당 기사에 대한 의견을 적을 수 있는 네티즌 댓글란에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B씨는 해당 댓글로 공연히 A씨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을 적었던 B씨는 모욕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 관련 법령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 모욕죄에 관한 판단은

1.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제311조)
2. 모욕죄에 해당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형식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지 여부)(제20조)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대법원의 판단

1. 먼저 대법원은 형법 제311조(모욕)에서 말하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또, 모욕죄에 해당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

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3. 또, 모욕죄에 해당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 대법원의 판단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댓글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댓글에 ‘기레기’라는 표현은 ‘기자인 甲(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모욕적 표현에 해당되지만 형법 제20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평가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1) 해당 댓글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된 ‘네티즌 댓글’란에 게시되었다는 점

(2) 기사와는 다른 내용이 담긴 타 언론사방송내용을 근거로 비판적인 의견이 담긴 댓글을 게시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B씨의 댓글도 다른 댓글들과 같이 위와 같은 방송 내용을 근거로 비판하는 의견을 강조 또는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고, 다른 댓글과 비교할 때(B씨의) 댓글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을 근거로 위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론

즉, 인터넷댓글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 사정에 따라 모욕적 표현에 해당될 수 있지만, 해당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기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